

일반동아리 운영규정

제1조(목적)본 규정은 제주한라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’ 이라 한다) 학생회에 속하는 일반 동아리 (이하 “동아리” 라 한다)의 구성 및 등록, 관리,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원의 자격)본 대학의 모든 동아리의 구성은 재학생에 한한다.

제3조(등록요건)동아리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본 대학의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동아리가 아니어야 한다.
2. 소속 동아리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성하는 정회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.
3. 동아리의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최소 5개 과 이상의 학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.
4. 설립목적이 타 동아리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녀야 한다.
5. 동아리는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취임 승낙을 받아야 한다.

제4조(등록절차)①동아리로서 신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(각 2부)를 첨부하여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지도교수 승낙서
2. 동아리 회원명부
3. 회칙
4. 행사계획서

②동아리는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.

1. 지도교수 승낙서
2. 동아리 회원명부
3. 회칙
4. 행사계획서 및 직전학기 행사 결과 보고서

제5조(1학년 회원가입)1학년은 1학기에 준회원, 2학기에 정회원으로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6조(임원선출)①동아리 임원의 선출 및 임기는 각 동아리의 회칙에 따른다.

②임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명부를 즉시 학생복지처장(소정양식)에게 제출,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도교수)①지도교수는 동아리로부터 추대 받은 본 대학 전임교원으로 한다.

②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 이상 동아리의 지도교수를 겸임할 수 없다.

③지도교수는 소속 동아리의 모든 학생회 행사에 참석하여야 하며, 그 동아리의 활동을 책임지도 하여야 한다.

④지도교수가 해외연구 파견 및 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교수에게 일정기간 대리업무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복지처장에게 위임교수를 추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⑤지도교수가 사임했을 경우에는 사표수리 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지도교수 취임승낙서를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재정)①동아리 운영상의 재정은 회원의 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외부로부터 재정적 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복지처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②학생복지처장은 필요한 경우 동아리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③동아리 대표자는 매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를 경유 학생복지처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동아리 전 회원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제9조(동아리의 활동)①등록된 동아리는 본 대학의 행사 또는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
②모든 행사는 집회허가원을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.

③야간 옥외 집회시에 횃불,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생복지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집회에 관한 게시물, 현수막, 프로그램, 팸플렛, 기타 유인물을 그 초안을 사전에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, 인쇄하여 배부한다.

⑤동아리는 각 행사 완료 후 7일 이내 활동보고서 및 결산서를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집회허가)①동아리 대표자는 집회 시 집회허가원을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타 대학과의 연합행사인 경우에는 15일전에 행사내용, 예산서, 참가교, 동의서, 집회허가원, 홍보물 제작 및 배부 허가원을 첨부하여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,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동아리가 학생회 회비 사용을 요청할 때에는 학생회 총학생회장의 허가를 받은 후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한다.

제11조(간행물)①동아리가 발행하는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은 홍보게시물 관리규정에 의한다.

②동아리의 모든 간행물의 편집, 인쇄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은 홍보게시물 관리규정에 의한다.

제12조(등록취소)①등록된 동아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학생복지 및 지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이 동아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동아리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대학생다운 활동에 전념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

2. 동아리의 활동이 학생회 운영규정에 위배되거나 본 대학의 명예를 손상시킬 경우
3. 1년간 행사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한 경우
4. 기타 본 규정을 위배했을 경우

②활동 및 성격이 유사한 동아리는 학생복지 및 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통폐합 할 수 있다.

③동아리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그 동아리의 대표자는 해체사유서를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(기타)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복지 및 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